

#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·운영 동의(안)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9월 3일 /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9월 1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1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▪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(2024. 9. 23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박상근 자원순환과장)

### 가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○ 포항시 남구 호동 65번지 일원에 위치한 포항시 재활용선별장을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 위탁·운영하여 포항시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나. 제안사유

○ 「폐기물관리법」제6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관리·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.

○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3조 및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제8조(선별·처리 등)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을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함.

(환경부훈령 제1568호, 2022.12.01.)

○ 경제성이 낮은 재활용품에 대한 소극적인 재활용률을 제고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, 재활용시설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운영 확대.

- 민간의 재활용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기계·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재활용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 가능.

### 다. 제안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2조(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)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」 제33조(업무의 위탁)
-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제6조(의회 동의)

## 3. 위탁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포항시 재활용선별장
- 위치 : 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45(호동)
- 처리용량 : 41.6톤/일(선별 25.6, 증축 16)
  - 재활용시설 : 선별시설 2식, 압축시설 5식, 스티로폼 감용기 1식, 계근대 1식
- 공사비 : 97억원(국비 27, 도비 8, 시비 62)
- 시설면적 : 대지면적 29,325㎡, 건축면적 2,805㎡(연면적 3,182㎡)
- 처리공정 : 반입 → 수선별 → 파봉 → 수기계선별 → 압축(감용) → 보관(판매)
- 현황

구분	내용
인력현황	33명(관리 3, 사무 2, 현업 25, 기타 3) - 파견 3명 포함
시설현황	파봉기 1대, 비중발리스틱 1대 압축기 5대(다용도 1·캔류 1·플라스틱 2·필름포장재 1) 풍력·자력·광학선별기 각 1대 스티로폼 감용기 1대, 계근대 1대 등
장비현황	중장비/차량 8대(굴삭기 2, 지게차 2, 진개덤프 1, 하이카 2, 일반 1)

※ 현행 위탁·운영 현황

- 위탁기관 : (주)제철동주민협의체[(주)삼우그린 컨소시엄 참여]
- 계약기간 : 2023. 1. 1. ~ 2024. 12. 31.(2년)

나. 위탁개요

- 위탁방법 : 민간위탁

❖ 민간위탁 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(법인·단체·기관에 위임 사무)에 따라 정해진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와 「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」제33조(업무의 위탁) 규정을 적용

- 위탁시설 : 포항시 재활용선별장
-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6. 12. 31.(2년)
- 수탁기관 지정
  - 수탁기관 :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
  - 수탁선정 : 공개모집에 따른 위탁자 선정
  - 선정방법 : 모집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→ 제안서 평가 → 수탁기관 선정 → 협상 → 계약체결
- 위탁사무 내용
  - 재활용선별장의 종합적인 관리·운영
  - 재활용선별장 건물, 토지, 장비, 부대시설 등 일체 유지 관리
  - 재활용품 선별·보관 및 처리
  - 선별 잔재물 처리 및 선별품 판매
  - 기타 선별장 활성화 및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등

다. 위탁운영 추진계획

-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및 선정 : 2024. 10.
-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: 2024. 11.
- 민간위탁 계약 : 2024. 12.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박명권)

- 본 동의안은 포항시 남구 호동 65번지 일원에 위치한 포항시 재활용 선별장의 위탁운영을 위해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」 제33조제2항에 민간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, 공공위탁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전년도 대비 재활용품 매각량은 24.3%, 매각금은 35.2% 늘어 운영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, 재활용률도 6.6% 증가하였으므로 민간위탁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해당 재활용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 민간위탁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직·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 온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처리원가 절감과 경영수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·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#### 6. 토론의 요지 : 없음

##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